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8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조승환·이성권·서일준

안철수 · 권영세 · 이인선

구자근 • 인요한 • 김성원

유용원 · 임이자 · 김도읍

김은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.

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,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.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 조사 등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마다 조사구역 내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에 설치 된 노상주차장의 운영 현황을 조사(이하 "운영현황조사"라 한다)하 여 그 결과를 국토교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
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 인 보호구역
-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현황조사에 관한 특례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현 황을 조사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보호구역 내 노상주차
	장 운영 현황 조사 등) ① 시
	<u>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마</u>
	다 조사구역 내 다음 각 호의
	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
	운영 현황을 조사(이하 "운영
	현황조사"라 한다)하여 그 결
	과를 국토교퉁부장관에게 제출
	하여야 한다.
	<u>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</u>
	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
	2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에
	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
	및 장애인 보호구역
	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조사
	의 방법 및 결과 제출 등에 필
	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
	<u> 정한다.</u>